

Interim United Church of Canada Process for Mutual Recognition of Ministries between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Church of Canada 캐나다연합교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자 상호인정 협약을 위한 캐나다연합교회 임시 과정

2015년 9월 캐나다연합교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목회자 상호인정을 위한 협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했습니다. 이 문서는 캐나다연합교회 내의 협약 이행 현황을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번에 체결한 협약은 캐나다 연합교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간의 목회자 상호 인정에 대한 중요하고 역사적인 발걸음입니다. 연합교회에서 이 협약 체결이 완전히 시행되기까지는 몇 년이 소요될 것이며, "목회 동역자"라는 새로운 목회 카테고리의 신설을 요합니다. 목회 동역자로서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자는 연합교회 개교회 목회지에 지원할 자격이 주어지며, 해당 개교회에서 목회하도록 청빙(Call: 목회 임기 제한 없음) 또는 단기서약 목회 임명("Appointment: 목회 임기 단기 제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캐나다 이민 신청 및 과정 요건은 개교회 목회자 청빙 절차와는 별개이며 청빙 또는 단기서약 목회가 확정된 후에만 캐나다 이민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협약의 중요한 측면은 목회 동역자로서 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가 캐나다연합교회 안수 목사와 동등한 지위와 책임을 가지고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으며, 연합교회에 안수 목사가 되기 위한 전입 과정(admission)을 거칠 필요없이 연합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카테고리는 교회의 노회에서 "The Basis of Union"(연합교회 창립문서)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만 신설할 수 있습니다. 이 안건은 현재 교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통과될 경우 2018년 8월에 열리는 제 43차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019년 이전에는 합의안의 완전한 이행(청빙 자격)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의 기간동안 연합교회는 기존 정책에 따라서 '목회 파트너십'을 임시로 임명하여 협약의 정신을 이행할 것입니다.

상호인정 협약의 정신에 준하여 캐나다연합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자를 위해 2016년 11월부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상호 인정 협약에 따라 모든 지원자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에큐메니칼 사무국에 캐나다연합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소명을 밝히고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 장로회 총회 에큐메니칼 협력 위원회와의 인터뷰를 거치며, 승인될 경우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해당부서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에큐메니칼 협력 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연합교회에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개교회는 영어를 사용하며 캐나다 연합교회 기관들 역시 영어를 주 언어로 사용합니다. 캐나다의 일부 지역에서는 프랑스어를 사용하지만, 이 지역의 연합교회 목사들도 전반적으로 영어권 목회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연합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기독교장로회 목사는 서류 제출과 인터뷰들을 통해서 영어로 효과적으로 의사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상호인정 협약에 따라서 목회 지원자는 상대방 교단의 역사적, 문화적 목회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추어야 합니다. 연합교회는 이를 위한 자료와 필수 교육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자료에는 "캐나다연합교회 소개: 주요 내용과 소개 및 해설" ("An Introduction to The United Church of Canada: Key Texts with Introductions and Commentary")이 있고, 한글본과 영어본으로 출판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장로회 총회 에큐메니칼 사무국에서 이 자료집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연합교회 목회에 관한 간략한 소개" ("A brief Statement on Ministry", 2015)는 기독교장로회 총회 에큐메니칼 사무국을 통해 한국어로 제공되며, 온라인을 통해 영어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자료들은 캐나다연합교회 웹사이트 www.united-church.ca ("Mutual Recognition" 검색)에서 볼 수 있습니다.
4.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자는 목회 동역자 자격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모든 캐나다연합교회 목회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두 가지의 온라인 교육 과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교회 지도자를 위한 바운더리 이슈 (Sexual Abuse Prevention and Response Policy (also known as Boundary Issues for Church Leaders)와 인종 정의 인식 (Racial Justice Awareness) 과목이며, 각 교육 과정은 약 3-4 시간 가량 요됩니다. 과목 등록은 캐나다연합교회 교육 웹사이트(website (<https://www.united-in-learning.com/index.php/webinars>))를 통해서 합니다.
5. 연합교회에서 목회하는 모든 목회자는 범죄기록 증명서(Police Records Check Report)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자는 연합교회 총회 사무실에 최신(6 개월

이내) 범죄기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유죄 판결 기록이 있는 경우, 유죄 판결의 유형과 발생 시기를 명시해야 하고, 목회자 지원 자격에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캐나다연합교회 총회 사무국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6. 연합교회에서 목회 파트너십으로 목회하고자 하는 기독교장로회 목회자는 상호인정협약 신청서와 추천서를 총회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서류는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하며, 캐나다연합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이유와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목회와 본인의 신앙 여정이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개인 진술서(a personal statement)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7. 위에 요청되는 문서들을 제출한 후, 목회 원자는 화상 인터뷰에 초대를 받습니다. 인터뷰의 주된 초점은 연합교회의 상황과 목회에 대한 이해와 개교회 목회에 대한 지원자의 관심입니다.
8. 위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교단 총회 사무국으로부터 캐나다연합교회 목회 파트너십 목회에 대한 허락을 받은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자는 목회자 청빙 공고 목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 동역자는 캐나다연합교회 개교회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인터뷰에 응해야 하는 책임을 가집니다. 노회의 성공적으로 인터뷰를 통과하고 임명이 완료되면 지원자는 캐나다 이민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목회 동역자 허가를 받지 못한 지원자에게 총회 사무국에서 재신청 가능 여부와 시기를 알려줄 것입니다.

회원자격

상호 인정 목회 임명을 받은 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는 한국기독교장로회 노회와 캐나다연합교회 노회의 회원 자격을 모두 유지합니다.

징계절차

상호 인정 협약으로 목회하는 목회자는 소속 교단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 요건들을 충족해 가야만 합니다. 위법 행위 혹은 범죄 혐의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현재 목회하는 교단의 절차를 따릅니다. 이로 인해 현재 목회 임명의 변경 또는 해지, 혹은 캐나다연합교회에서 목회 활동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검토가 시작되고 검토

결과에 따른 후속 결정이 내려지면 한국기독교장로회에 통지됩니다. 교단에서의 목회적 지위에 대한 자격 여부는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 판단합니다.

캐나다연합교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상호인정 협정은 양 교단간의 역사적인 약속입니다. 완전히 이행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서로 간의 합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고 기념될 것입니다.

2017 년 3 월